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4
----------	-----

2023. 4. 25.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4. 25.)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유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삭제 및 신설, 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별도 명시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현행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추가(안 제3조3호 신설)

나. 실무협의체 기능 구체화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역할 삭제(안 제5조1항 1호~3호 신설, 기존 4호 수정)

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변경내용을 반영(안 제6조2항)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한 회의 운영 구체화 (안 제14조 신설, 안 제6조4항 및 제8조5항 삭제)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사회보장과의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 조례안은 조직개편(23.01.01자)에 따라 (종전)복지정책과의 일부 업무분장 사항을 분리하여 (신설된) 사회보장과에 배정·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 복지정책과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총괄적으로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심의·자문 등을 맡던 역할을 조직편성에 맞게 업무를 분담·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음(참고자료 -2 참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1조 제2항과 제4항1)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함

1) 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생략)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 ⑦ (생략)

- 현행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음

실무협의체 심의·검토사항	구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사회보장과 소관 생활보장위원회 업무
4.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 업무
5.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집행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sup>2)</sup>를 반영하여 생활보장사업과 관련된 심의 사항을 강남구생활보장위원회로 이관·전속시키기 위해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②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 기능에서 (생활보장사업을)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안 제5조)

- 또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있어서 조직개편 사항(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을 일부 조정하였으며(안 제6조), 현행 조례 제4조에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혼재되어 있는 사항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항(소집절차 및 회의 정족수 등)을 별도의 독립된 조항(안 제14조)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 1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성별	소속
1	공동위원장	정헌재	남	부구청장
2	민간위원장	정순둘	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부위원장	고영한	남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관장
4	위원	김광심	여	구의원
5	위원	이호현	남	복지생활국장
6	위원	양오승	남	보건소장
7	위원	김귀자	여	강남세움복지관장
8	위원	전미애	여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9	위원	김기연	여	능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0	위원	이종미	여	강남청소년수련관 관장
11	위원	허명환	남	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
12	위원	마은희	여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3	위원	황정규	남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 본부장
14	위원	박상준	남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
15	위원	한혜선	여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
16	위원	전병윤	남	LH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지사장

## 2 복지생활국 조직개편 관련

### ○ 2023. 1. 1. 日 조직개편 시행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부서명 변경	사회복지과	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과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팀 재배치

### 3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

#### ○ 설치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 ○ 구성위원

연번	구분	성명	성별	소속	비고
1	당연직	조성명	남	구청장	위원장
2	당연직	이호현	남	복지생활국장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간사 : 사회보장과장
3	당연직	양오승	남	보건소장	
4	당연직	옥미정	여	복지정책과장	
5	위촉직	박윤영	남	성결대학교 교수	
6	위촉직	전미애	여	총신대학교 부교수	
7	위촉직	최미경	여	대청종합사회복지관장	
8	위촉직	김기연	여	능인종합사회복지관장	
9	위촉직	전병윤	남	내서울남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장	
10	위촉직	양재석	남	노인통합지원센터장	

#### ○ 기능: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본 위원회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구에서 시행하는 급여에 대한 사항</li> <li>·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우선 보장에 관한 사항</li> <li>·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금액·주기 등에 관한 사항</li> <li>·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li> <li>·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li> <li>·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항목 관련 사항</li> <li>· 자동차를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li> <li>·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li> <li>·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li> </ul>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4. 25.)

- 질 의 : 실무협의체 기능 각 호의 용어에 대표협의체라는 표현이 이상하다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 답 변 : 날카로운 지적임. 조례 상정 후 재검토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가 미처 정비되지 못했음을 발견함. 수정이 필요함
- 질 의 :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과장, 팀장의 나열은 조직 개편 등의 경우 반복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나열 순서도 애매함.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 답 변 :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보장, 보건의료 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 분야 팀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 수용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64호

발의일자 : 2023. 4. 25.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 용어 통일이 미비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수정함
-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을 나열 방식으로 규정하여 반복적인 개정이 우려되어 나열이 아닌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으로 규정을 수정함

### 2. 수정내용

- 대표협의체라는 용어를 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5항)
-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을 사회보장, 보건 의료 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으로 수정함(안제6조2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을 “사회보장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팀장, 생활보장팀장, 어르신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의무팀장”을 “사회보장, 보건의료 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으로 한다.

안 제14조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에 응한다.

1.·2. (생략)

<신설>

제4조(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

1.·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

제4조(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

<삭 제>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  
-----  
-----  
-----  
-----  
-----  
-----.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  
-----  
-----  
-----  
-----  
-----  
-----.

1. 사회보장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  
1항에 규정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② (생략)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  
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증진  
-----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복지  
정책과장, 복지자원팀장, 여성정  
책팀장, 생활보장팀장, 어르신정  
책팀장, 보건지도팀장, 의무팀장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생략)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8조(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  
영) ① ~ ④ (생략)

----- 복지자원팀장 -----  
-----  
-- 장애인정책팀장, 여성정책팀  
장, 감염병예방팀장-----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8조(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  
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사회보장, 보건의료 분  
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은 -----  
-.

⑤ 동 보장협약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삭 제>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약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약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약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약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약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약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약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약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14조 ~ 제18조 (생략)

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 제19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증진”으로 한다.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 협력

제6조제2항 중 “복지자원팀장, 여성정책팀장”을 “복지자원팀장”으로, “보건지도팀장”을 “장애인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감염병예방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삭 제>

<삭 제>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  
-----  
-----  
-----  
-----  
-----  
-----.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

규정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② (생략)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팀장, 여성정책팀장, 생활보장팀장, 어르신정책팀장, 보건지도팀장, 의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생략)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증진----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복지자원팀장-----

----- 장애인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감염병예방팀장-----.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동 보장협약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동 보장협약체의 회의에 관  
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8조(동 보장협약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  
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  
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  
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대표협의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 제18조 (생략)

제15조 ~ 제19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